[서식 예] 법인세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



소 장

워 고 ㅇㅇ공업 주식회사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 ○○○ - ○○○) 대표이사 ○ ○ ○

피 고 △△세무서장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 ○○○ - ○○○)

법인세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가 20〇〇. 〇. 〇. 원고에 대하여 한 20〇〇년 귀속 법인세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금 1,000,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이 사건 청구의 대상인 처분

원고는 소외 ☆☆화학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★★주식회사 발행 주식을 매수하면서 우선 계약금만을 지급하고 잔금은 연불 조건으로 3회에 걸쳐 지급하되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하여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이율과 같은 비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20○○. 1. 1. 같은 해 2. 1. 및 같은 해 3. 31. 등모두 3회에 걸쳐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였는데, 피고는 위 이자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지급자인원고에게는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에도

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20〇〇. 1. 24.자의 가산세 부과처분 성명 였습니다.



2. 가산세부과처분의 위법성

- 가.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 미납부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는 법인세 납부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이 그 납부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이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과징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.
- 나.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미납부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법인세 중 일부가 이미 납부된바 있으면 그 납부일 이후로는 이를 공제한 나머지 세액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.

그런데 원고는 2000. 6. 30. 이 사건 법인세로 피고에게 금 20,000,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.

그렇다면 그 이후의 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제한 그 잔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도 피고가 이 사건 법인세 전액에 대하여 미납부 가산세를 산정하였습니다.

3. 전심절차의 경유

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고,

- 가. 20 0 0 . 3. 1.국세청정에게 심사청구를 하여
- 나. 같은 해 4. 3. 그 기각결정통지를 수령하였고.
- 다. 같은 해 5. 3.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.
- 라. 같은 해 6. 3. 그 기각결정 통지를 수령하였는바.

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전심절차를 모두 거쳤습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할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

1.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납세고지서

1. 갑 제2호증 결정서

1. 갑 제3호증 결정서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납부서 1통

2000년 0월 0일

원 고 ○○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○ ○ ○ (인)

○ ○ 행정법원 귀중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소기간	※ 아래(2)	참조	www.klac.o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행정처분을	한 행정청	
제출부수	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 큼의 부본 제출	관련법규	행정소송법	제9조 ~ 제34조	:
비 용	・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・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		
불복방법 및 기 간	· 항소(행정소송법 제8조, 민사소송법 제390조) ·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(행정소송법 제8조, 민사소송법 제 396조)				

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제9조)

- 1.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 법원임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

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제20조)

- 1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기산함.
- 2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(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